

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의회 의록

제 13 호

국회사무처

2024년 11월 2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205261)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8)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6)
4.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04595)
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7)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2)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0)
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7)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5)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
1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
1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1)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7)
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9)
1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0)
1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8)
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
1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3)
2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0)

21.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3)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5)
2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3)
24.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2)
2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4)
2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6)
2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2)
2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3)
2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2)
30.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6)
3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9)
32.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6)
3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0)
34.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3)
3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1)
3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5)
3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7)
3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8)
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3)
4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5260)
4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4)

4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6)
43.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45)
44.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778)
45.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94)
46.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문금주 의원 등 21인 발의)(의안번호 2205744)

상정된 안건

1.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205261) 5
- o 신상발언 7
1.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205261) 10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8) 10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6) 10
4.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04595) 10
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7) 21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2) 21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0) 21
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7) 21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5) 21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 ... 23
1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 23
1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1) 23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 ... 23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7) 23
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9) 23
1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0) 23
1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8) 23
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 ... 27

1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3)	27
2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0)	28
2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3)	29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5)	29
2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3)	32
24.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2)	32
2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4)	32
2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6) ...	32
2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2) ...	32
2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3)	32
2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2)	32
30.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6)	32
3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9)	32
32.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6)	35
3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0)	35
34.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3)	35
3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1)	35
3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5)	35
3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7)	35
3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8) ...	35
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3)	35
4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5260)	53
4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4)	56
4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6)	56
43.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45)	57
44.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778)	58
45.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94)	62
46.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문금주 의원 등 21인 발의)(의안번호 2205744)	63
○ 5분자유발언	66
- 5분자유발언 의원(이언주)	66
- 5분자유발언 의원(장경태)	68
- 5분자유발언 의원(김현정)	69

(14시09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우리 국민들이 와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김교홍 의원실에서 소개해서 광복회 인천서구지회 서른세 분이 오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보내 주십시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393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205261)

(14시11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부차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신영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신영대 국회의원이 2020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로부터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관련하여 민원 등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 2024년 1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에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영대 의원은 청탁 및 금품수수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물 공여자, 전달자 등 사건관계인들은 신 의원에 대한 청탁 및 금품제공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문자메시지, 한국수력원자력 내부자료, 신 의원의 의정활동 내역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공범인 신 의원 보좌관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신 의원이 해당 지시·권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SNS 대화방에서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등 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익과 민의를 대변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지역구 현안 관련한 민원을 이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한 중대 범죄입니다. 신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해당 기관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있습니다.

신 의원은 이렇게 취득한 금품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참고로 신 의원에게 뇌물로 공여된 1억 원은 국민 재정으로 운영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출자한 법인의 자금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결국 신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착복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신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가 당락에 직결되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가 존재합니다. 신 의원의 여론 조작으로 인해 왜곡된 유권자의 의사가 군산시 지역구에서 본선 절차나 다름없는 당내 경선 절차에 반영됨으로써 신 의원은 근소한 차이로 경선에서 승리하였고 결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편 본건 뇌물 범행의 경우 수뢰액이 다액입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행입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징역 7~10년, 감경하더라도 징역 5~8년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납품 관련 청탁을 받고 6500만 원을 수수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확장 관련 청탁을 받고 약 9100만 원을 수수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된 바도 있습니다.

이보다 수수액이 더 큰 본 건에 대해서는 유사하거나 보다 중한 형의 선고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뇌물 전달자가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의원의 선거를 도운 대가로 뇌물을 나누어 받은 이들이 별건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모두 구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뇌물 수수자이자 여론조작 최종 수혜자인 신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신 의원은 뇌물수수 직후 전달자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라는 등 증거인멸을 지

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뇌물 공여자와 전달자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 의원에 대하여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2024년 10월 31일 신영대 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임정엽 판사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기에 정부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이 안건은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재판을 면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고 이 부분은 영장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신영대 의원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영장 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일반 국민과 다르게 영장 재판을 면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 우원식 자, 이제 그만 정리하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상발언

(14시17분)

○의장 우원식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영대 의원입니다.

먼저 저로 인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심려와 부담을 끼쳐 드린 점은 진심으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제가 여기에 왜 서 있어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검찰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제 입장을 하나씩 밝히겠습니다.

검찰은 4년 전인 2020년 제가 한수원이 추진한 새만금 300MW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를 요구하면서 분할발주를 요구하다가 금품을 받고 그 요구를 철회했다고 주장합니다.

단언컨대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당초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는 전라북도, 군산시, 지역 언론, 시민들 모두의 요구였습니다. 저 또한 당선되자마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지역사회의 정당하고 간절한 뜻을 받들어서 한수원을 불러서 지역업체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분할발주를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에서 국가계약법상 분할발주가 어렵다며 그 대신 재생에너지 수익의 30%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기자재와 시공 공사의 최소 55% 이상, 최대

100%까지 지역업체에게 발주하겠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대안을 마련해서 저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국가 법률상 분할발주가 불가능한 것이 확인되었고 한수원의 대안이 분할발주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억측했던 뇌물수수의 핵심 전제가 사실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당연히 금품은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아무런 물증도 제시하지 못한 채 유일하게 주장하는 증거는 제게 돈을 줬다는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뿐입니다. 이 진술,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는 지난 4월에 자신이 돈을 다 받았더니 구속된 이후에 난데없이 저에게 돈을 줬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돈도 저에게 다 준 게 아니라 6000만 원, 1000만 원씩 제가 아는 사람한테 나눠 줬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제가 왜 나눠 주냐는 겁니다. 사람을 구속해 놓고 얼마나 겁박하고 회유했으면 진술을 180도 번복했겠습니까.

다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선거 기간 동안 지지자들이 만든 카톡방에서 지지자들이 서로 투표 독려를 하고 02로 시작되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달라고 올린 것을 허위 응답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 카톡방에 제가 초대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범이라고 주장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100여 개 단톡방에서 오가는 대화를 후보자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 선거를 치러 보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도 저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리하게 영장에 추가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속 사유 또한 날조 그 자체입니다. 영장을 보면 제가 도주하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공인인 국회의원이 도주를 어찌 하며 잠적을 어찌 한단 말입니까? 윤석열 검찰이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증거인멸 우려라는 것도 황당합니다. 압수수색에서 제가 가진 휴대폰 2대를 모두 제출하고 비밀번호도 즉시 다 풀어서 제출했습니다. 이게 증거인멸입니까?

한수원에 뇌물과 관련된 서류를 다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통화를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받은 관계자끼리, 본인들끼리 한 통화입니다. 공기업 사무실에 어떤 서류가 있는 줄 알고, 제가 무슨 수로 알고 삭제하라고 지시한단 말입니까?

지난 6월 말에 국회 의원회관과 저의 군산 집, 서울 원룸 숙소, 행정 담당 비서관의 자택에 대해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당시 군산 저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의원회관에 있던 우리 보좌진들이 변호인과 상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려고 지난 4년 의정활동 기록이 망라된 외장 하드를 제 방에다가 모아 뒀다고 합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온 이후에 이 자료를 모두 가져갔고 포렌식까지 마쳤는데 이게 증거은닉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제 검찰이 보좌진 책상은 압수수색하고 의원 책상은 압수수색 안 했습니까?

지역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황당합니다. 검찰이 군산 사무실을 세 번 압수수색했습니다. 5월 초 압수수색에서 하드디스크 모두를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렌식을 마친 다음에 5월 하순경 되돌려받은 후에 검찰이 포렌식한 자료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라서 군산 직원이 다 교체했다고 합니다. 다 가져간 자료 돌려받은 다음에 교체하는 게 이게 증거인멸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왜 윤석열 검찰의 타깃이 됐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제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조직돼서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나오자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측근 김영철 검사가 차장으로 부임한 뒤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이 뒤바뀌고 민주당 국회의원 하나 잡아 보겠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이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어차피 타깃을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명해 봤자 필요 없다,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저한테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순진했습니다. 결백하기 때문에 소명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검찰이 부를 때마다 나가서 성실하게 진술하고 지난 8월에는 12시간 넘게 설명하고 나왔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뇌물을 수수했다고 검찰이 확신했다면, 막말로 신영대 뇌물수수 혐의에 자신이 있었다면 이미 8월 달에 영장 치고 기소했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바뀌는 진술만 있으니 여론재판식 모욕 주기라도 하려는 듯 명태균·윤석열 공천개입 녹취록이 공개된 당일 날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작 지난 몇 달에 걸쳐 검찰이 치졸하게 언론 플레이하던 100여 대의 차명 휴대폰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영장에 적시조차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여야를 떠나 동료 의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인 영장 청구는 부결해 주시고 김건희 특검법은 가결해 주시기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양심의 결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믿음이 옳았음을 반드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치검찰의 폭주를 멈추고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신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205261)

(14시25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양부남 의원, 염태영 의원, 김소희 의원, 조승환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26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44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93표, 부 197표, 기권 5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8)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6)

4.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04595)

(14시45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박성준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기형·황운하·임광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안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11월 30일을 경과해 예산안 등을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청래·김용민·박주민·조승래·민형배·신정훈·김병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안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조사에서 중요한 안전심사와 청문회까지 확대했습니다.

둘째, 국회로부터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셋째,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등이 질병 등의 사유로 허가를 받은 경우 원격 출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에도 활동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증인 등의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허위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받은 서류의 파기·은닉,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방해, 송달 관련 정보 미제공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여당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제한하고 그 몫을 비교섭단체에 배분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박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 배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선진화법 취지에 거꾸로 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정안은 민생을 인질로 잡는 법입니다. 위헌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흑역사를 재현하는 법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시 국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하신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해당 예산안 등은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회가 정쟁과 지연이 반복되며 예산안 처리가 벼랑 끝까지 가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마저 위협받자 2011년 5월 당시 여야 황우여·김진표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제 도입 직전 3년간 예산안 본회의 통과일은 1월 1일 새벽 또는 12월 31일 밤 11시를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자동부의제 도입 이후 첫째는 12월 2일,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매년 12월 10일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회는 예산 및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를 통해 예산이 정치적 협상의 인질이 되는 것을 막고 예산을 적기에 통과시켜 불확실성을 해소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자동부의제 폐지 개정안은 이를 다시 10년 전의 깜깜이 속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과반 의석이라는 것을 무기로 국정을 흔들고 민생을 불모로 민주당의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는 핑계로 민주당은 운영위 간사 간 전혀 합의되지 않은 법률안을 최소한의 숙려 기간조차 지키지 않고 전체회의를 뛰어넘고 법안소위로 직접 회부했습니다.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기재부의 출입도 불허한 채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자동부의제 폐지를 포함한 총 45개 법안을 개당 3분의 시간도 논하지 않고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정감사 도중인 지난 10월 31일 밤 11시가 다 돼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한 뒤에 국민의힘 반대에도 또다시 일방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본회의마저 일방통행하며 기어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듯 늦어도 12월 10일까지는 끝마쳤던 예산 의결일자를 12월 21일, 24일로 늦춰 가며 국정운영의 발목 잡기를 거듭해 왔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예산안 자동부의제를 완전히 폐지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나라를 흔들어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의무를 가진 국회가 오히려 예산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살림을 멈출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54조에서 정한 예산 의결기한 준수 의무를 어기고 국회 마음대로 예산 의결일을 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위헌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이번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방통위든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기관들은 기본경비와 특수활동

비를 무차별 삭감해 사실상 기관 운영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회 다수당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혈세는 온 나라에 온기가 돌 수 있게 적기에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처리는 저잣거리의 거래수단이 아닌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임은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상임위 날치기 처리한 법안들을 대거 상정해 또다시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의 의총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광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 예산안, 세법 프리패스 제도 알고 계십니까? 프리패스는 놀이공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민주주의, 대한민국헌법은 국가 예산안을 국가가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확정 짓습니다. 법률과 달리 대통령에 의한 공포를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만 차년도 국가 예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동부의제 도입 이후 심사 기간 내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사례가 전무하여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권이 형해화되었습니다. 제17대 국회부터 예산심사 결과를 보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의 고작 1% 범위에서 증액 또는 삭감을 결정해 왔습니다.

심사 기한 준수는 어떻습니까? 최근 10년도 중 기한 준수는 2회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모두 법정 심사 기한을 넘겼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의회민주주의 헌법들은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 대상, 과세표준, 납세 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세법은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사실상 정부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는 것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정부 예산과 세법 프리패스 제도인 현행 국회법 때문입니다. 2012년 개정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물리적 충돌 사태를 개선했지만 예산과 세법에 대한 국회의 심사 권한 약화를 초래했습니다. 선진화법 개정으로 예산부수법률안 심사 기한을 11월 30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 개정 합의가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정부안이 12월 1일 자로 자동부의되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자동부의를 염두에 둔 정부 여당은 세법 심사 과정에서 방어적·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신속 절차로 인해 정부의 의도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심화되었습니다. ‘대표

없이 조세 없다'는 대원칙과 국회의 조세입법권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세법은 추가로 개정·폐지되지 않는 한 효력이 영속적이므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예산안보다 지속되는 효과가 있어 더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435건의 세법이 예산부수법률안 지정 신청을 했는데 이 중 정부안은 147건 중 142건이 지정되어 지정 비율이 97%에 달합니다. 반면에 의원안 세법은 발의된 수천 건 중 극히 일부인 288건 신청에 102건이 지정되는 데 그쳐 지정 비율은 35%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진대 정부 세법 프리패스 제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동부의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상임위 심사가 자동부의 전까지 형식적 명분 쌓기 수준으로 격하되었습니다. 예산부수법률안 지정되는 12월 이후 기재위 소위 간사 간 협의 또는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세법이 주로 결정됩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둘째, 국회의 세법 심사가 부실해졌습니다. 조세소위는 매년 수백 건의 세제를 심사해야 합니다. 9월 정부안 제출 이후 10월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11월에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면 내용 파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상당수 항목이 여야 의견이 대립되는 쟁점 안건입니다. 따라서 심사 횟수가 더 늘어나도 부족할 판에 자동부의제 도입 이후 오히려 30%나 감소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셋째, 실효성도 미흡합니다. 자동부의제도의 거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 또한 여소야대 국회 이후 미달성되는 등 실효성이 미흡합니다.

저는 정부에서 조세정책을 28년간 담당했습니다. 기재부는 세법은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할 정도입니다. 이 얼마나 오만한 인식입니까? 이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왜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놓아 버리는 것입니까? 정권은 돌고 도는 것이니 여당도 야당이 될 수 있고 야당도 여당이 될 수 있습니다. 소수당도 다수당이 될 수 있고 다수당도 소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 여야, 다수·소수, 유불리를 떠나서 조세법률주의 대원칙에 충실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 세법 프리패스 제도인 자동부의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임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72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01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구미시를 출신의 강명구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 앞에 서서 하는 첫 토론이 이런 비상식적인 악법에 대한 반대토론이라는 게 서글픈 마음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정쟁이 아무리 치열하다 하더라도 지킬 선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를 남용하여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시키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악법들을 남발하다 보면 이것은 더 이상 의회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의회독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의 면면을 보면 역사가 악법이라고 평가할 만한 법안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제가 반대토론을 할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국회법상 최소한의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안소위부터 상임위,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 여야 간 협의와 합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위헌적입니다. 위법적입니다. 사람을 강제 구인하는 것은 사실 무서운 것입니다. 대단히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권력 행사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동행명령 적용 증인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현행법상 국정감사·조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형 없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청문회 또는 중요 안전심사의 증인에게까지 확대한다면 해당 증인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나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국회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법안을 자세히 뜯어다 보면 엉터리 조항이 수두룩합니다. 법안소위 단계부터 제대로 된 숙고와 논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수집과 보유만으로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큰 개인정보로서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안을 민주당은 마치 국회 개혁의 핵심인 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정작 법안을 뜯어다 보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국회의 권한을 무제한 남용하겠다는 야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면 최소한의 숙려와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 절차조차 무시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동 법안을 의결해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의 편의에 의해, 특정 목적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령 국회라 할지라도 아니, 민의의 전당인 국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악법을 통과시킨다면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닌 무제한 권력의 폭주기관차로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강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형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의원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연히 찬성해 주셔야 합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증감법을 손보자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에서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특별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이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출석하는 것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를 통해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 경험입니다.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증인이 두 번 연속 불출석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당시 청문회는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로 진행이 됐습니다.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은 주권자 시민을 대리하는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현저하게 방해합니다.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지요. 청문회 유명무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컸던 이유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얼마나 망가졌는지 과연 고쳐 쓸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국회라도 제대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공정,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 운운하면 뭐 하겠습니까. 시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직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은폐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죄도 없는 제1 야당 대표에게는 온갖 조작수사를 통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느라고 안간힘입니다. 이것은요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무려 스물다섯 번의 거부권,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이후에 최대·최악의 기록입니다.

‘윤석열,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인가’, 이게요 천주교 사제 1467명의 시국선언문 제목임

니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진이 전국 60곳 이상에서 계속해서 성명서를 내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입니까? 눈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을 절감합니다.

윗물이 온통 썩었으니 아랫물이 맑을 수 없습니다. 용산 따라서 행정부도 국회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합니다. 모든 국회 회의마다 자료제출 질타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 10월 6일, ‘정부와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제출, 자료제출 거부 그리고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 이게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23년 10월 26일, ‘이는 국회의원을 능멸하는 거다.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정무위에서 국감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서 강민국 국회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 여야가 구분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번 증감법 개정안은 주권자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온전히 세우고 헌법정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친애하는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도대체 반대하시는 이유를 제시해 보십시오. 적어도 주호영 부의장님하고 강민국 의원님의 문제의식을 지금 이 개정안에 다 담았습니다. 최소한 두 분은 찬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인의 국회 불출석은 국회와 주권자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 헌법정신 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찬성해 주십시오. 현명한 선택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민형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69인 중 찬성 171인, 반대 96인, 기권 2인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여러 특검법을 반복해서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상설특검을 민주당 입맛대로 맞춰 지명하는 꼼수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이러는 것,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 규칙안이 통과되면 생길 문제점이 뻔히 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사건을 가지고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을 해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사건 쪼개기를 통해서 다수의 특검을 발동시킬 수도 있고 수사 기간이나 인원도 고무줄처럼 늘릴 수가 있어서 국민 혈세가 특정 정치세력의 상설특검 놀이에 줄줄 썰 것입니다. 특검 하나 가동하는 데 최소 100억 원이 드는데 소중한 세금을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데 써야지 정쟁에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상설특검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가로채기를 통해서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방해할 수도 있고 여죄나 공범 수사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독단적으로 공수처라는 사실상 상설특검 같은 조직을 만들었고 그동안 편파 수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 다. 현재 국민들께서 공수처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공수처 시즌2를 하나 더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누구보다 섬겨야 하는 거대 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수사의 칼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쥐어 쥐서 휘두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수사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누구도 승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상설특검은 도입될 때부터 여야 합의로 특검을 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행정부 소관인 수사기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공정한 특검이 선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2014년 4월 상설특검 국회 규칙이 도입될 때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상설특검이 정치적·정파적 입장이 있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이 특정 인물을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주당 정성호 의원께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설특검 지명은 불가능하다라는 견해를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금 정부 여당이 영원하라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항상 중립적 시각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하겠다고 정치적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꾼다면 민주당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규칙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체계에 정면으로 안 맞습니다. 헌법재판관이나 중앙선관위원을 추천할 때에도 국회는 여야의 균형을 이루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법률에서도 인사추천권을 여야에 균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여야가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폭주하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똑똑히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선 무효형 확정을 막기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재판을 질질 끌며 꼼수를 부리려는 모습이야말로 역사에 명명백백히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전 의원의 지적처럼 정부 여당도 거대 야당도 영원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규칙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헌법적 망신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주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의원입니다.

2024년 정치인에게 양심은 무엇입니까? 무도하고 폭압적인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가짜권력, 즉 비선실세를 비호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 우리 국회의원의 양심은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섯 번 거부하는 동안 여당은 그 권력 앞에 굴종하고 있었고 비선실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당은 양심을 버린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고 하는 특별감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 다시 말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감사 임명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족의 비위 의혹은 특검법을 만드는 동안 어느새 한 페이지를 넘어 두 페이지를 빼곡하게 채워 갔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법·비밀 선거사무소 운영,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연일 쏟아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족의 비위 의혹들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들은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 불기소로만 일관하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특검 운영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게끔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일가족 수사에 한해서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시켜 더욱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다른 대상의 수사에 대해서는 여당도 추천권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당은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본인 또는 그 일가족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추천권을 갖게 된다고 하면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쓴 해설집을 보면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을 대통령에 의해 또는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검사의 양심이나 정의감·도덕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만 의지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제도의 속성과 그 작동 현실을 도외시한 태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과거 윤석열 검사의 말을 따르자면 정치적으로 독립된 사람 또는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헌법정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다는 것입니다. 실제 2016년 최순실 특검법, 2018년 드루킹 특검법은 그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정신, 다시 말해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자 했던 특검 추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또한 이런 정신을 녹여서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제고시킨 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자체가 위헌이다, 특검이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겠다라는 말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해충돌 상황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세 차례나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 운영 규칙안에 대해서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인들께서 양심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헌법 수호 정신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안전에 대해서 반드시 찬성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7)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2)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0)

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7)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5)

(15시26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5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유상범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유상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 유상범 위원입니다.

법사위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표준화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유·관리·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정준호·강유정·추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에 대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도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서일준·장동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김교홍·배준영·민형배·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천광역시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한편 회생법원 미설치 지역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 및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대전·대구 및 광주에 각각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민형배·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신설에 따라 회생법원과 접근성이 인정되는 고등법원 권역에 대해 중복관할을 허용하는 한편, 법원의 구인명령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학영 유상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67인 중 찬성 258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68인 중 찬성 268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68인 중 찬성 266인, 기권 2인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70인 중 찬성 270인으로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70인 중 찬성 269인, 기권 1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

1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

1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1)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7)

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9)

1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0)

1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8)

(15시35분)

○**부의장 이학영** 의사일정 제10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대식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대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인순 의원과 김대식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식 의원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비율 완화와 자회사 의무지분 완화를 통해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및 고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학교의 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 필기시험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승아 의원, 임오경 의원, 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둘째 학교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민원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 정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둘째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위해 인솔교사를 보조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이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과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율을 인하하고 부과 대상을 축소하여 부담금을 경감하며, 둘째 학교 증축 시에 비용부담을 명확히 하고, 셋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 보고를 통보로 변경하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지영 의원, 강득구 의원, 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하여 그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전체 학생선수로 확대하고, 학교장이 반드시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협의해 준 우리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김영호 위원장님과 법안 처리에 협력해 주신 정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학영 김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4인, 기권 3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2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47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6인, 기권 4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3인, 기권 1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2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44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

1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3)

(15시49분)

○**부의장 이학영** 의사일정 제18항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충권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박충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충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양여 등의 기간을 최장 50년으로 연장하고 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충권 의원과 이정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고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경력설계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이공계 인력의 성장 주기에 따른 지원의 공백을 보완하고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및 퇴직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학영** 박충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49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8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의사일정 20항 들어가기 전에 경주시당원협의회 또 APEC추진위원회 회원님들께서 우리 오늘 의안의 통과를 격려하고 바라시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40)

(15시53분)

○부의장 이학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석기 위원장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 김석기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의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석기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은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의 천년고도이며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담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 돌아온 APEC 정상회의의 국내 개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 구분 없이 191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GDP의 약 62%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관련 지역 협력체인 APEC 정상회의는 그 경제적인 기대성과가 큰 것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세계 21개국 이상의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교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의 각료, 글로벌 CEO 및 기자단들을 대상으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천년고도 경주를 세계에 알리는 등으로 장차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쳤습니다. 심사 결과 동법의 지원 범위를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의장국 수임 기간 중 개최되는 제반 회의로 확대하고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준비기획단과 정상회의 개최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6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법을 통해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학영 김석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9인, 기권 3인으로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3)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5)

(15시59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건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대리 김건**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김건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후덕 의원, 박충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홍기원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총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시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둘째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면서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해외에서 재외공관 등에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학영**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탈북자 지원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정안에 담고 있는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다거나 가족 유형 및 자녀 양육 현황을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자는 내용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7조의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기획탈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탈북을 이끌었던 식당 매니저 허 모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종업원을 데리고 올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종업원들을 하나원에도 안 보내고 따로 관리하며 기획탈북 의혹을 키웠습니다.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 국정원의 발표에서 시작된 사건인 점에서 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탈북 사건을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등 수많은 의혹을 낳았지만 이 사건은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탈북 브로커가 있고 탈북이 기획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자칫 정부가 예산을 사용해 기획 탈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탈북자 이슈가 발생하는 장소는 중국과 러시아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필요하다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7조를 수정해서 국회에서 재의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정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02인, 반대 6인, 기권 39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3)
24.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2)
2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4)
2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6)
2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2)
2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3)
2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2)
30.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6)
3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9)

(16시08분)

○부의장 이학영 의사일정 제23항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서천호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서천호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관 예정인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어선 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건조·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구조사의 자격등급을 세분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업무역량을 실제 업무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수상구조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상구조사 자격을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의 자세한 사항과 이 밖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학영 서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5인, 기권 1인으로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1인, 기권 2인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37인 중 찬성 234인, 기권 3인으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39인 중 찬성 238인, 반대 1인으로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40인 중 찬성 234인, 기권 6인으로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43인 중 찬성 242인, 기권 1인으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46인 중 찬성 245인, 기권 1인으로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46인 중 찬성 245인, 기권 1인으로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6)

3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0)

34.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3)

3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1)

3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5)

3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7)

3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8)

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3)

(16시20분)

○**부의장 이학영** 의사일정 제32항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원택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이원택**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8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심사보고를 중점 법안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윤준병 의원, 박수현 의원, 서삼석 의원, 어기구 의원, 송옥주 의원, 황명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를 산정 시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외하고, 손해평가사의 전문성 제고 및 교체 요구 근거를 마련하며 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문대림 의원, 문금주 의원, 정희용 의원, 박수현 의원, 서삼석 의원, 윤준병 의원, 어기구 의원, 송옥주 의원, 성일종 의원, 박상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대비해 농업재해 대상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농민의 경우 농작물이 소득의 전부인 점을 감안해 그동안 생계구호 수준에 그쳤던 재해 지원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며, 복구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농어가들의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윤준병 의원, 황명선 의원, 어기구 의원, 신정훈 의원, 서삼석 의원, 임미애 의원, 박수현 의원, 정희용 의원, 송옥주 의원, 전종덕 의원, 박희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밀, 콩 등을 양곡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을 통한 벼 재배면적 조절과 당해연도 쌀 생산량의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고 기준 이상 쌀값 하락 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손실보전과 쌀값 대폭락·폭등의 위기 발생 시 대응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윤준병 의원, 문금주 의원, 황명선 의원, 이병진 의원, 주철현 의원, 위성곤 의원, 문대림 의원, 서삼석 의원, 임미애 의원, 박수현 의원, 어기구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이 제조업의 1.5배에 이르러 농산물 수급불안이 심화됨에 따라서 농업소득이 악화되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농가의 소득안정과 국민에게 충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 폭락 시 기준가격과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가격 폭등 시 소비자 보호 대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기후재난과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4건을 포함한 총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이원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답 썩썩하게 해서 좋네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41인 중 찬성 241인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42인 중 찬성 242인으로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의장님, 칭찬 한번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대답 크게 했는데 칭찬 한번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잘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5인 중 찬성 243인, 기권 2인으로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흠 나오셔서…… 박덕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네요.

○박덕흠 의원 떡흠이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입니다.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들은 이전보다도 더 나은 정치, 진정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해 주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6개월째 숫자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횡포로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요식절차로 전락을 시키며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심사를 마치고 졸속 처리를 했습니다.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우리 농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반대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정안은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농어업재해보험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특히 보험료 할증은 여야 상관없이 농해수위 위원님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국정감사에서 농민이 과실과 상관없이 재해로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지역에 따라서 다른 시군 기본요율이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장관은 이에 공감을 하면서 할인·할증 제도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시군 기본요율을 농가별 재해위험도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낮은 보장 수준의 보험을 가입할 때 할증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직 자신들만이 정답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착각, 오만함으로 민주당

안을 졸속으로 급하게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피해방지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만 할증을 부과하는 주장이지만 60만 명이 넘는 보험가입자의 방지 노력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된 정책은 좋은 결과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토론과 설득, 타협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연재해 피해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농어업 재해보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보험이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 개정안이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여야 의원 모두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제가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발의안을 두고 함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다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쪽 날개로 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왼쪽 날개가 있어야 오른쪽 날개가 제구실을 하고 반대로 오른쪽 날개가 있어야 왼쪽 날개도 역할을 하는 법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야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 개정안에 대해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농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안전에 반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박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호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임호선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박덕흠 의원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개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리고 보험료 할증이나 지역에 따른 요율 적용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또 민주당이 저희들만의 안이 정답이라고 오만을 부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오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도시민에게는 낭만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골에서는 117년 만에 11월에 온 가장 많은 폭설로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어제 오늘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열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벼멸구가 창궐해서 농가 피해가 어느 해보다 또한 컸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이러한 농어업재해로부터 우리 농가의 경영안정 또 농업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 재해보험은 어떻습니까? 심각해지는 재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해 수준은 농가가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현행 보험 제도, 존경하는 박덕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이 손봐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기존 방식대로 손해를 관리만 내세우면서 기존 방식을 그대로 작동되게

놓아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수익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보험이 아닙니다. 정책보험입니다. 농어업 보호를 위한 공적 역할을 높여야 됩니다. 본 개정안의 핵심, 재해 피해를 산정 시에 피해 농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농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재해인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료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때문에 시·군 단위, 일부는 읍·면 단위로 보험료를 할증 적용하는 지금의 방식,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대안을 내와야 됩니다. 토론 과정에서 정부는 아무런 대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본인의 과실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등 일반보험과 달리 자연재해와 이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 본 개정안이 농어업재해보험에서 할증제도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지적 말씀 주시는데 할증 적용을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개정안은 보험 가입할 때 농가에 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고지하고 농가가 이를 방기했을 때 할증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민생과 식량안보 관점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분들께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오늘 본회의에서 찬성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애타는 심정을 반드시 헤아려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량안보, 식량주권의 근간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덜고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변화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안에 대한 찬성은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부디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임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84인으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인 농어업인의 재해 복구와 경영안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개정안들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본 법안을 포함한 4개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 이견이 큰 법안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한 안전조정위 또한 철저히 무력화되었습니다. 대화와 토론, 합의정신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폭거입니다.

내용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내용 면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시키고 기존의 법률 체계와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재해 유형 및 지원 범위 확대,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이미 모든 재난과 안전관리를 포괄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처럼 농어업만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기존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기능 중복과 집행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법과의 상충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본법인 재난안전법은 재해 지원의 원칙으로 생계 구호 및 응급복구를 명시하고 경제적 손실보상은 별도의 보험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처럼 생산비 보장을 포함한다면 재난안전법의 지원 원칙을 넘어서게 될 뿐만 아니라 농어업재해보험법과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재해보험법은 농작물, 가축 등 다양한 농어업 분야에서 보험을 통해서 생산비와 수확량 손실을 보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해보험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 대상 품목 확대 등의 노력으로 가입률이 2014년 16.1%에서 23년 52%로 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처럼 재해대책법에 생산비 보장이 추가된다면 농가는 보험 가입 대신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게 돼 있어서 보험제도의 취지 약화와 이중 지원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재난 지원 원칙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농어가에 대해서 생계 안정 및 긴급 피해복구를 지원

하는 것입니다. 반면 생산비 보장은 농어업재해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비 보장을 재해대책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본 개정안은 재난 지원 체계와 보험 운용 구조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책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므로 반대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이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대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어민 가족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제주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대림입니다.

저는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과 117년 만의 폭설이 우리나라를 할퀴고 갔습니다.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모두 전례 없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사시사철 자연재해의 공포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기후위기 최전선인 국토 최남단 제주는 지난 한 해 동안 봄에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벌마늘 피해, 여름과 가을에는 고수온 피해와 폭염으로 인한 감귤 열과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제주뿐만이 아닙니다. 충남이 자랑하는 예산황토사과축제는 폭염에 수확량이 크게 줄어 취소됐습니다. 명성이 높은 전남 나주배는 일소 피해를 겪으며 까맣게 타들어 갔습니다. 모두가 전례 없는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민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농민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재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을 통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은커녕 생계 구호 수준에 불과해 기후위기로부터 농민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그저 긴급 구호만으로는 농업을 지킬 수 없고 식량안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 농민들의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하도록 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농어가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내용은 명료합니다.

농업 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농어가를 위한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조를 포함하고 실거래가 대비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농약대·대파대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단가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농어업 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험 사각지대의 농어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제도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정부는 재난 등에 대한 일반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재난 지원의 원칙과 상충된다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분야 지원과의 형평성 훼손,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구호를 넘어 일상으로의 온전한 회복 그리고 농업 재생산에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까지 보장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이 가결되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타 분야 지원과의 형평성을 구실로 농어업 재해대책 강화를 막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벌어질 세계적인 식량안보 각축전에서 우리 스스로 식량안보 포기 선언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형평성을 내세워 하향 평준화하자는 것이야말로 농업을 망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주장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회의에 올라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은 재해로 인한 농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전을 규정하여 기본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농업 민생 법안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이 농어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문대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62인 중 찬성 175인, 반대 87인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전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쌀의 특구 여주시, 친환경 농업의 특구 양평군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입니다.

평생을 농촌 현장에서 매일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저는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심정으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은 220만 농민을 분열시키고 농업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족쇄를 채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올라온 양곡법 개정안은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들어 보세요.

공정가격이라는 미명하에 쌀값이 평년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 주라는 양곡 가격안정제를 법에 규정했습니다. 이전의 양곡관리법과 대단히 다른 법이 아니라 재탕, 삼탕으로 만들어진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법입니다. 쌀 소비가 줄고 있고 쌀이 과잉 생산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쌀값 보전에만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들어부어야 합니까? 식량안보가 위기인데 정치권은 언제까지 잉여쌀 처치에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아웅다웅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비판이 매섭지 않습니까?

밀, 콩, 옥수수 등 정작 자급률을 높여야 하는 품종은 식량안보를 지켜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업인이 쌀농사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전환을 유도해야 할 상황에서 모두가 벼농사만 짓고 공급이 과잉되는 악순환을 두고 봐야 합니까?

지금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되어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만 양곡 매입과 보관에 1조 3000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올해는 1조 600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이 필요한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의 양곡법이 시행되면 2030년에는 3조 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정작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쌀 생산을 줄일 유인이 없어지면서 공급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2030년 산지 쌀 가격은 17만 원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장 우원식** 자, 토론을 들읍시다.

○**김선교 의원** 벼농사 농업인이 아닌 타작물 재배 농업인들도 역차별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품목 간의 갈등도 커질 것이고 농업 전반의 경쟁력도 약화될 것입니다. 정부가 쌀값을 책임지라는 방식으로만 끊임없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농민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하는 의원 있음)

남아도는 쌀의 악순환, 딜레마를 탈출하려면 농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다. 쌀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좋은 품종의 쌀.....

(「그만하자고!」 하는 의원 있음)

신정훈 의원, 가만히 계세요!

(장내 소란)

친환경 농법의 쌀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K-푸드 열풍을 살려 외국에도 수출하고 새로운 소비 수요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저품질 쌀을 다량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양곡법은 쌀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농업은 지금 인구소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극심한 기후 변동, 산업사회 변화로 위기입니다. 농업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기술의 혁신뿐 아니라 영세농 지원, 후계 청년농 육성, 디지털 스마트농업 전환 그리고 식량 위기를 타개할 타작물 전환 등에 더 많은 예산 선택과 집중이 절실합니다.

양곡관리법에만 얽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곡관리법의 족쇄를 끊어 버리는 결단을 단호히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김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내 소란)

자, 좀 조용히 합시다.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토론을 들읍시다.

다음으로 임미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사짓는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을 조정하기 위해 재배면적 줄이자. 둘째, 재배면적 줄이기 위해서는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밀, 콩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쌀 수익 수준으로 보장하자. 셋째, 쌀이 일정한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한다.

위 세 가지 정책은 정부가 그간 해마다 해 오던 정책입니다. 단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 가격을 20만 원 지키겠다, 재배면적 줄여서 해마다 반복되는 과잉생산 줄이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지금 쌀 가격 18만 원선입니다. 20년 전 쌀값이 16만 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의 18만 원선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입니다. 농민으로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재배면적 줄이겠다 약속했지만 정부는 목표만 제시했지 지난 3년 동안 어떤 성과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를 법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이번 개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 법안에 대해 송미령 장관께서 농업을 망치는 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가격 폭락 시 쌀을 매입하고 폭등 시에 시장에 방출하는 것은 농산물의 수급조절 기능과 비축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농정 당국의 고유의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조문에 대해 농정 당국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두고 남은 쌀 강제 매입법이다 왜곡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 정부가 매입하는지가 핵심인데 그 기준이 되는 가격과 물량, 시기는 정부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용은 초과생산량 3% 이상, 쌀값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이라는 시장격리 기준을 법에 명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에 대한 권한을 정부에 넘겼습니다. 그만큼 정부에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이 규정을 넣은 이유는 쌀이 식량안보의 핵심 품목일 뿐 아니라 임차농이 절반이나 되는 농촌 현실 때문입니다. 가격이 심각하게 폭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시장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임차농이 먹고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도 정부는 매년 초과생산 물량에 대해 시장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초과생산 물량을 격리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을 법에 명시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정책으로는 할 수 있지만 법에 담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의무를 부과하면 망한다고 과도한 공포를 조장합니다.

반대로 묻겠습니다.

최근에는 초과생산 물량의 2배 이상 격리하겠다고 발표하지만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났기 때문 아닙니까?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이고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자는 취지를 공포 조장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또 동 법안으로 쌀 과잉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쌀 이외의 타 작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기계화율 99%의 쌀농사보다 더 나은 농사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법 간단합니다. 타 작물의 기대소득을 올려 주면 됩니다. 왜 정부는 쌀의 기대소득을 낮추는 하향식 구조조정으로 강요하는 것입니까? 쌀의 기대소득을 낮춰 쌀 농가들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동 법안을 야당이 날치기 통과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지난 8월부터 소위에서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일부 조항 양보할 수 있으니 쌀값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정부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쌀값이 오를 것이라고 대답했

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하필 지금이나, 토론해서, 합의해서 통과시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내년 농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읍면마다 진행되는 영농 교육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전달되어야 하고 농민들이 내년 영농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농민들이 내년에 희망을 가지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동 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당부드립니다.

동 법안은 내년이라도 농업이 정상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정당을 떠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정에 힘을 실어 주는 법안입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만약 또다시 동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우리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원식 임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종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농해수위 위원 전종덕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 들어오시기 전에 식사하셨지요? 우리 농민들이 지은 쌀과 농산물로 식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쌀값 폭락에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약속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는 의원 있음)

(「지키신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근본적 대책은 세우지 않고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조금씩 물량을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사태를 키워 온 것이 핵심 책임입니다.

양곡 정책이 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제도적 대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번 쌀값 폭락이 오히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법을 포함한 농민 민생 4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하고 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라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 이렇게 농민들 앞에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쌀값은 폭락하는데 잡지도 못하면서 기다려 달라는 말만 무한 반복했던 농식품부 장관이 농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농망 4법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니 농민들이 농업을 망치는 농망부 장관이다, 재해보다 못한 재앙장관이다, 사퇴해라 이런 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량 수급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해 가격의 급등락을 막자는 것입니다. 가격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들도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쌀값 폭락을 정부는 과잉 생산에서 찾지만 원인은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쌀과 수입 농산물에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잘못된 물가 정책의 결과입니다.

값싼 외국산 농산물은 수입 확대하면서 국내 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고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수급 조절의 책임을 농민들한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내 농산물의 자급 기반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수입 농산물을 중단해야 합니다. 수입쌀을 지키자고 농업·농촌·농민들을 희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공비축미가 확대되는 것이 쌀 과잉 생산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공공비축미는 식량위기 대비용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위기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곡물 자급률 20%의 식량 수입국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제 기준 이상으로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공비축 물량에는 밀과 콩 이런 곡물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곡물들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민들이 요구한 공정가격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생산비를 넘어 농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생산자 이익 보호, 적정가격 유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고 식량자급률 제고 또한 법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쌀값은 농민들의 목숨값이라고 합니다. 농업의 미래 없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농민 없이는 먹거리도 없고, 먹거리 없으면 국민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국가가 쌀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해마다 반복되는 가격과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식량안보는 우리가 맞이하는 식량위기 시대에 최고의 근본 대책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양곡법 개정안 의결로 농사로 부르든 손, 주름진 얼굴, 흉년이 되어도 풍년이 되어도 울어야 하는 우리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압도적 찬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농민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전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4인 중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 처리로 상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안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안법은 오천만 국민 모두의 먹거리인 우리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제도적으로 아우르는 핵심 민생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러한 중요한 민생법안을 법안심사의 합의정신은 물론이고 상임위에서부터 법사위, 본회의 상정 등 모든 법안의 심의 절차와 단계에서 충분한 숙의와 협의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처리 과정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국민 모두의 일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처리를 이렇게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참으로 깊은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행위는 합법적인 국회 운영이었다고 강변합니다. 대통령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원색적인 비난으로 일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 합의정신과 법안의 숙고 절차가 모두 무력화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야말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민생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행태에 맞서 우리 국민과 농민의 민생을 지키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소 및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여 차액보전을 의무화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간단명료하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시장가격의 왜곡을 초래합니다.

품목의 선정과 가격 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고추와 마늘, 양파, 무, 배추와 같은 주요 5대 작물만 하더라도 연간 1.1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WTO 감축대상 보조에 해당되어 5대 작물 이상으로 확장 시에는 국제규범의 위반과 불필요한 국가 간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선 농업 현장에 서조차 민주당의 개정안은 답이 아니라고조차 합니다.

(「누가 그럼니까? 누가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야당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제도의 전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인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소비자인 국민의 민생을 지키고자 합니다.

(「뭐가 적절한 가격이야!」 하는 의원 있음)

(「누가 그렇게 자꾸 고함질러!」 하는 의원 있음)

야당은 수입안정보험제도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정작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는 등 민생마저 외면한 국정 발목잡기의 행태를 보란 듯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의 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을 볼모로 소모적인 정치 행태를 지금이라도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단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책임 있는 여당의 농해수위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농망 4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건의합니다.

앞으로도 야당의 정쟁 입법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농민 살리자니까 정쟁 입법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또한 우리 농민과 농촌·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공익형 직불제의 지속적인 확충, 수입안정보험의 성공적 안착 등으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누가 최선을 다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무리…… 말 좀 가려서 합시다.

아무리 국회가 망가져도 말 좀 가려서 하자고요.

(장내 소란)

○의장 우원식 조용히 하세요.

이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 주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소리치고 그런 것은 가급적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금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이 875원이라던 대과 한 단 값이 실제로는 얼마였습니까? 4000원이 넘었습니다. 사과 1개에 1만 원 한다는 금사과라는 표현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배추, 마늘, 양파 등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제값도 못 받고 매번 갈아엎는 가격 폭락 사태는 또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생산자인 농민도 소비자인 서민도 모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은 결국 농업 경영을 위협하고 식량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농가 경영 위험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채소가격안정제만 보더라도 채소류가 7개 품목에 국한되어 있고 전체 생산량의 17% 수준입니다.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 70여 개의 지자체에서 94개 작물 대상으로 가격안정제를 시행 중에 있으나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특정 품목 및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정책 효과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 시대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의 어려움은 멈출 줄 모릅니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정 품목 쏠림 현상으로 공급과잉, 가격하락 등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고 소비자 물가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가격을 보장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요 농산물에 동시에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특정 품목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가격을 책정할 경우 공급과잉이나 수급 불균형 방지가 가능합니다.

둘째,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위원회 심의 의결로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지급 비율 등이 결정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수립의 기본을 망각한 주장에 불과하며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필수적이고 기준가격 등 정책 설계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생산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농정의 기본입니다.

셋째, 과도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국농업경제학회와 대통령 직속 농특위는 600억에서 1조가 넘는 재정 소요를 예상

합니다만 연구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 소요액은 유동적입니다.

낮은 수준의 시범사업부터 시행하며 기준가격과 보전 비율을 높여 가며 시행하거나 시장 격리를 포함한 수급 조절 사업으로 적정 가격 유지 시, 즉 농림부가 잘하면 소요 예산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가격안정직불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익직불제 예산을 5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중의 1조 원만 투입해도 농산물 수급 안정을 할 수 있음에도 과도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것은 자가당착적 아닌지 의문입니다.

넷째, 수입안정보험으로 농가 경영 안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해 채소가격안정제가 시행 중이므로 도입이 불필요하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도입하고 채소가격안정제를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농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합리화하기 위해 급조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물가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본질을 흐리는 주장입니다. 주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도입되면 주요 품목의 가격이 안정화되어 농업인의 투기성 재배가 줄어들어 생산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즉 그동안은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 직전 연도에 가격이 좋았던 품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생산 불안정이 심하였으나 이 같은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부담 경감으로도 이어져 외식업체나 소상공인에게도 과거보다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농안법 개정안 관련 정부의 주장은 가짜뉴스와 왜곡으로 뒤섞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부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뽕족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정부의 무능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농민을 위해 대안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야당의 입법을 무책임하게 반대하는 것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불과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라는 민생 해결의 의무를 갖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바로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쌀과 한우, 농수산물의 가격이 폭락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시작된 1차 산업의 위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께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농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국민에 힘, 농민에 힘이 되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문금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53인 중 찬성 166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5260)

(17시25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40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건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대리 김건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으로서 2026년 1조 5192억 원, 이후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5%의 상한선을 도입하였으며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제도를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동맹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필요성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의 소요형 전환 방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개선 방안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전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키자고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12차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은 국민과 국익에 손해만 입히는 비준안입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특별협정으로 만들어 한국이 부담하는 부분을 국회의 비준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원칙적으로 한국이 무조건 줘야 하는 의무적인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방위비분담금, 국민께 과도하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안에 따르면 내년 지원금은 1조 5192억 원입니다. 1991년 제1차 협정 지원금에 비해 14배 넘게 올랐습니다. 쓰지 않는 예산은 당연히 국고로 환수해야 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은 예외입니다. 주한미군은 미집행금을 쌓아 두고 이 돈으로 이자수익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분담금 외에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도 2조 4000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기지 환경 정화 비용, 기지 이전 비용 지원도 별도입니다. 한국은 이미 너무 큰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인상률은 무려 8.3%인데 이 인상률은 예산이나 사업 평가에 기반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 측이 제시한 인상률을 맞추기 위해 그야말로 묻지 마 인상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은 국민 경제에, 민생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훨씬 더 불평등하고 국익에 손해인 협정입니다. 우리나라만 주한미군 주둔에 사용하는 만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만 정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방위비분담금 지급 방식을 총액형이 아니라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예산의 집행 주체도 일본은 일본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용액이 생겨도, 예산이 남아도, 주일미군 무기 정비에 불법 전용되었을 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매해 자동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2022년 주둔비 협정을 맺은 일본은 협정 당시에만 인상하고 5년간 인상 없이 타결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만 유독 불리하고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셋째, 감시·통제가 없는 예산, 국회 의견조차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는 분담금의 결정 방식과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지난 10차 협상안, 11차 협상안을 비준하며 국회는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지급하고 있는 직간접 비용을 포함해 분담 기준을 재고할 것. 회계감사 실시하고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은 환수하도록 노력할 것. 미집행 현금과 현물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총액형이 아니라 소요형으로 전환을 추진할 것'. 그러나 이번 12차 특별협정안은 국회에서 지적한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예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곳입니다. 5년간 8조 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는데도 오히려 인상해 주는 예산, 국회의원으로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복지예산을 삭감해 가며 과중하게 세금만 부담시키는 이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협정 타결을 두고 다양한 제도 개선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협상의 상대국 미국 캠벨 국무차관은 '한국은 너무 너그럽고 관대한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인을 머니 머신이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방위비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라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일본과의 외교에서도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로 국민께 지탄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협정안을 체결하는 것 역시 미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의 결과입니다.

트럼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부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트럼프가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트럼프 임기가 오기 전에 비준하자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트럼프를 대비하는 유리한 협상 카드 맞습니까?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협정안을 국회가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서둘러 무사통과시켜 준다는 것을 미국과 트럼프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국이 서두르고 겁내고 있다는 인상만 줄 것입니다. 오히려 트럼프에게 더 큰 베팅과 압박을 해야 되겠다는 근거를 줄 것입니다. 트럼프의 베팅이 두려워 먼저 머리를 숙일 이유도 없고 지레 겁먹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해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외교이지 않습니까. 국회는 정부의 잘못된 외교정책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으며 국민의 혈세를 퍼주는 일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곳입니다. 정부의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에 국회가 들러리 서지 맙시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이번 12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부결시키고 외교의 주권을 다시 논의합시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12차 방위비분담금 특별비준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정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173인, 반대 36인, 기권 25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4)

4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6)

(17시36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41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임종득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임종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임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각각 2025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주둔 중인 아크부대는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및 주둔국과의 국방협력 확대 등을 고려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고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역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임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06인, 반대 8인, 기권 13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03인, 반대 4인, 기권 15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45)

(17시40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43항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준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준혁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는 2024년 10월 8일부터 24일까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70개 기관을 감사했습니다. 국정감사 결과 드러난 비위와 문제점 등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요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김건호 청년보좌역의 교육부 직원으로서 한국학력평가원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참여에 대한 감사, 둘째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절차에 대한 감사, 셋째 한경국립대학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 처리 부적정, 대학원생 학습권 침해, 중등교육연수원 표적감사 및 부당해고, 총장 노래방 접대 강요 등 비위에 대한 감사, 넷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공공기관 물품 및 차량 사적 이용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김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16인 중 찬성 162인, 반대 25인, 기권 29인으로서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778)

(17시42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44항 2024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양부남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양부남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지역 양부남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감사원 감사요구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용을 절감한 점,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이 경제성 확보를 위한 목표치에 미달하여 한강 리버버스가 교통수단이 아닌 제2 유람선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경찰청에서 중심지역관서제도라는 중대한 경찰조직의 개편 사항을 추진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은 기존에 결정된 사업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과정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은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계약조건을 무리하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양부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태종대와 자갈치시장을 품은 부산 중구영도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서울시와 경찰청에 대한 감사요구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요구안은 요식 절차는 국회법을 따랐지만 그 내용은 법률과 상식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감사 요구의 바닥에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가, 표적감사 요구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왜 과도한 감사 요구인가, 표적감사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에 대한 감사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타당성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진행되는 등 규정과 절차에 어긋나게 진행되었고 각종 의혹이 있다고 감사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버버스 사업은 법률적으로 도선 사업입니다. 여객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도선법에 의하면 도선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가 첨부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설계와 건조를 통해서 선박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금액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선착장은 212억 전액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설계 및 공사가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37조의2에 따라 역시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선착장 건설비만 비용으로 산정하고 선박 구입비는 비용에서 제외시켰다고 사업 쪼개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객선 터미널을 지을 때 선박 도입비를 합쳐서 타당성조사를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더 조금 확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울릉도공항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행기를 도입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완전히 구분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선박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사업자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를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선박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제안을 바탕으로 상호 협의, 검토, 검증을 거쳐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고 서울시는 그 이후 제삼자 공모, 즉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의나 더 나은 점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물어보는 제삼자 공모까지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수차례 소명한 일입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에 대한 다른 감사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사업 중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은 단독공모를 인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방식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법적인 공모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공정한 참여기회 부여를 위해서 공모 방식을 추진한 것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관련 규정 절차를 이행하며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은 운영계획 차별화 방안 및 운영수지 개선 방안 구체화 등 사업 위치 변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위치 변경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표적감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감사도 법과 규칙의 존재는 아랑곳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감사 요구입니다.

감사 제안이유를 보면 중심지역관서제가 전체 과출소의 32%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경찰조직 개편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지역관서제는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인사권을 통해 인접 지역 관서의 인력을 하나의 지역관서에 집중 관리하는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의 없이,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지자체장이, 국가기관이 다수당의 입맛에 안 맞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조리돌림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십니까?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대한민국,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 점 깊이 헤아리시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조승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채현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갑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요구사항 중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부지 변경이 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등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는 국회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국회법 제127조의2는 감사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24조를 보면 지자체 사무와 지방공무원의 직

무는 감사원 감찰 대상입니다.

국회에서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를 의결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행안위 제안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의 기초자치단체 전부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환노위 제안으로 경주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제안하는 이유는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법행위가 드러났고 아직 밝히지 못한 의혹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서울시 사업들의 공통점은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밀어붙이는 한강 개발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시장이 치적을 남기려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법과 절차를 어기고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SH공사가 출자한 리버버스 사업자가 위법적으로 해양수산부가 민간에 지급하는 국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은 특정 업체를 위한 입찰요건 사전 모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도 오세훈 시장의 한강 개발 욕심에 희생됐습니다. 당초 제2세종문화회관은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정상적으로 건립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하고 설계·착공을 앞두고 있던 명확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납득할 만한 해명도, 주민설명회 등 공식 절차도 전혀 없이 기존 문래동 건립을 일방 철회하고 졸속으로 건립 부지를 여의도공원으로 바꿨습니다. 서울시가 행안부에 제출한 공문에 부지 변경 사유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계획은 최근 행안부 중투심에서 인근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문제 등을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성과 타당성이 없이 졸속으로 급조된 사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해야 하는 책무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위법행위와 남아 있는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것도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감사원에서 서울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에 대해 진상을 밝혀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부디 본 감사요구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채현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146인, 반대 76인으로서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 번호 2205994)

(17시57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45항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건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대리 김건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김건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은 조계원 의원, 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결의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모든 적대행위와 무차별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자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셋째 가자지구 내 억류된 인질의 적극적 석방을 촉구하고, 넷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2인으로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6.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문금주 의원 등 21인 발의)(의안번호 2205744)
(18시00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46항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금주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문금주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등 생산비는 상승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3년산 쌀 가격을 80kg당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올해 10월에는 쌀값 안정을 위하여 수확기 대책을 수립·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쌀값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는 쌀 가격의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쌀 가격목표 제시 및 신속한 추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및 사후적 피해보전 대책, 이상 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방지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에 대하여 쌀 가격에 대한 명확한 가격목표 제시와 추가 시장격리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둘째 정부에 대하여 사전적 수급조절 대책 및 사후적 피해보전 대책의 수립과 이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셋째 정부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피해와 기후위기에 따른 생산량 감소 피해를 방지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넷째 정부와 농협에 대하여 농협의 손실에 대한 대책과 쌀 가격 안정의 주체로서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문금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용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입니다.

앞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과 본 결의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과 내용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전체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4시, 6시, 8시로 변경해 가며 여야 간 합의도 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시켰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2시간도 안 돼 심사를 종료하였습니다.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침례하게 대립하는 의견을 조정하는 기구인 안조위를 또다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전체회의에서 본 결의안과 법안들이 일방 처리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쌀값의 명확한 가격목표를 제시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목표가격제 폐지 배경과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목표가격을 중심으로 설계된 변동 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로 전환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고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쌀 초과생산, 수급 불균형, 재정부담 문제 등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앞장서서 폐지했던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격제는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추가 시장격리 부분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에 어느 때보다 빠르게 쌀 초과생산량 전량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당시 예상 초과생산량 12만 8000t보다 많은 20만t을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1월 15일 최종 발표된 24년 쌀 초과생산량 5만 6000t보다 14만 4000t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11월 20일경에는 24년산 쌀 3만t을 추가 매입하고 벼멸구 피해 벼 농가 희망 물량 1만 5000t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산지 쌀값은 11월 15일부터 미약하나마 반등을 시작하였습니다.

아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21대 총선 직후 180석의 거대 야당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이루지 못했던 법안을 왜 지금 와서야 강행시키려 하는지 그리고 왜 그때는 안 됐고 왜 지금은 처리하려고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당시 농해수위 소속이었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은 현재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쌀 소비량이 공급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쌀 초과공급, 쌀 초과생산이 문제이고 쌀 소비 감소가 문제인 것입니다.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재탕, 삼탕해 가며 반복적으로 상정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모습은 농민과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입법이 아니라 정쟁을 유발하려는 입법 폭주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는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데 쓰일 비용을 스마트농업, 친환경농업, 청년농업,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농업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쌀값 정상화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등급제 개편, 신규 수요 창출 등 쌀 공급과잉 해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합리적이고 깊은 고민이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정회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준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쌀값이 30% 이상 폭락하면서 농민들은 생산비 상승과 함께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의 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의 선의와 재량에 맡겼던 쌀 관리를 선제적·사전적 생산 조정 및 사후적 시장 의무격리로 전환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 명분으로 농민들에게 쌀값 20만 원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5일 이후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한 올 1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쌀값은 2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농민을 속이고 우롱했습니다. 자신들이 내세운 쌀값 20만 원 유지 약속조차 지켜 내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농정 실패와 무능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쌀값 20만 원 유지 약속은 수확기에 한정된 것이라며 쌀값 20만 원 유지 이행 책임에서 발을 뺏습니다.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장관이 강조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확기 10월부터 지금까지 평균 쌀값은 18만 4260원으로 현재의 쌀값 추세를 감안하면 쌀값 20만 원 유지 약속 이행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 무능이자 무책임 그리고 농정 실패를 상징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농정에 대한 무지·무능·무책임 그 자체가 농민들에게는 최대의 재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발표하는 쌀값 안정화 대책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농민, 농민단체, 지역조합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농민들은 농식품부 장관과 윤석열 정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쌀값 안정, 쌀값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 스스로 인정하고 야당과 농민이 추진하는 쌀값 안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쌀값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상정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의 의결과 실천이 시급합니다.

2024년 쌀은 최소한 20만 원 이상을 연중 유지하겠다는 가격유지 목표를 정부가 당장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쌀의 사전적 생산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에 대한 지원 예산을 2000억 이상 증액하고 지역농협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적극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의 정상화에는 여야의 구분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국회에서 앞서 의결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쌀값 정상화를 바라는 농민들의 애절한 희망을 짓밟는 그야말로 농망 행위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쌀값 정상화 및 쌀값 안정을 통해 농민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데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결의안 의결에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윤준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5분자유발언이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38인, 반대 59인, 기권 1인으로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8시14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이언주)

○의장 우원식 먼저 경기 용인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 지역의 이언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저와 우리 당 74명의 의원님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 방지 및 전쟁의 조기 종식과 인도적 지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안전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전황을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각종 신형 무기의 각축장이 되고 있고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은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맞붙는 등 정세는 견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러시아가 핵 교리를 개정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행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에 옮겨 붙을까, 혹여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도발이 한반도에 재현될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자칫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전쟁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순식간에 남북한 대리전으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며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은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해서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2%가 살상무기 지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 대선에서 당선된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적으로 조기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차기 트럼프 정권의 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이어 한국이 만일 전쟁에 개입한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전쟁의 평화적 종식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났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할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정부가 과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모두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무기 지원 검토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 외에 어떠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만료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어서 우리 국민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지지율이 20% 밑으로 추락하는 등 국내적으로 닥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혹여라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우리 국민들은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혹은 정부가 멋대로 선부른 결정을 내려서 안으로는 국민을 위협에 몰아넣고 국제적으로는 확전에 일조하게 된다면 이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러시아의 부당한 침공과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국익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와 정부에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평화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한·러 관계의 극단적 파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한·러 관계의 상호 간의 보완적 교역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경제적 번영이 많으며 향후에 북극 항로 개설 등 한·러 관계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국회가 한마음으로 뜻을 합해서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고 정부의 살상무기 지원을 반대하고 전쟁의 평화적 종식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원식 이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장경태)

(18시20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장경태 의원입니다.

저는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자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2025년도 예산안을 성실히 심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검찰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나오게 됐습니다.

검찰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848억의 특활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거나 국회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결산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 4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증빙과 소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며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업무경비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5개 청이 23년 8월 단 한 달 치만 서면으로 제출했으며 이조차도 미흡하게 제출했습니다. 3개월간 단 6개 검찰청, 그것도 휴가철인 8월만 그리고 사용시간도 몇 명이 이용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검찰 예산은 심의하지 말라는 오만방자한 행태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능멸하는 검찰의 소명 행태를 국회가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마약범죄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특활비, 특경비를 전액 삭감해서 합수본 운영에 차질이 생길 거라며 국회를 또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마약수사는 이미 국수본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마약수사 확대는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민께서는 제대로 된 증빙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하는 검찰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기밀수사와 무관하게 퇴임이나 이임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사용되거나 연말 보너스로 활용되거나 비수사부서에 지급되고 격려금,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했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8억 63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습니다. 하루 평균 480만 원꼴입니다. 2018년 설 명

절 3일을 앞둔 2월 12일에는 48명에게 총 7100만 원의 특활비를 무더기 지급했고, 2018년 추석 연휴를 3일 앞둔 9월 20일에는 36명에게 총 6000여만 원의 특활비를 지급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한 예산이거나 민생예산이 아님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국민 예산을 쌔짓돈처럼 여기며 특정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저는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자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며 검찰에 십여 차례에 걸쳐 특활비에 대해 증빙과 소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소명은커녕 소명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예산심의회가 무시되어야 하겠습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특수하지 않습니다. 특혜비로 변질된 특활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올해 반드시 전액 삭감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장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김현정)

(18시25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경기 평택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김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500만 주식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상법 개정의 절실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증시 평균 수익률은 고작 1.9%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과 대만의 평균 수익률은 10% 이상, 일본 중국 인도도 5%를 훌쩍 넘겼습니다. 우리 한국만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낮은 주주환원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정책의 일관성 부재 등 여러 요인들을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째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2020년 LG 화학의 물적 분할 그리고 2024년 올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의 합병,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재벌과 지배주주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 우리 주식시장에서 공공연히 벌어졌고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법 개정은 기업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500만 주식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저 주주들을 공정하게 대우해 달라는 것이며 소액투자자의 권익을

지켜 줄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주총 도입 등 저희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와 같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총주주의 권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을 가로막는 족쇄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문화 정착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되살릴 토대가 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한국거래소를 찾아서 한 말입니다. ‘법률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작년 4월 법무부장관으로서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한 발언입니다. 이사회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국민의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또다시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 논의에 함께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상당수는 2030 청년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면서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국민의 대변자라는 애기를 들으며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가장 중요한 소명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상법 개정과 관련한 기사 중에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가’. 쉽지 않다는 표현이겠지만 저는 여와 야가 함께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2항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바로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김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2인)

찬성 의원(171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광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수진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101인)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권영진	김 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은정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소영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현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천하람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0인)

찬성 의원(171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여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희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97인)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김 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현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천하람	최보운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기권 의원(2인)

이소영 장철민

(한지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반대로 정정)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281인)

찬성 의원(179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희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운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02인)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희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현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천하람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67인)****찬성 의원(257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민정	권성동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양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희중	유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인선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희			

반대 의원(2인)

박범계 이용우

기권 의원(8인)

고동진 곽상언 김원이 민병덕 박찬대 박홍배 이광희 한창민

(박범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68인)****찬성 의원(268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8인)

찬성 의원(26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성동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염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2인)

민병덕 이인영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0인)

찬성 의원(27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성동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0인)

찬성 의원(26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민정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희	

기권 의원(1인)

용혜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57인)****찬성 의원(254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진	김병주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3인)

곽상언 용혜인 전종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59인)****찬성 의원(252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칠승	권항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2인)

용혜인 이광희

기권 의원(5인)

곽상언 권영진 모경중 박지혜 박홍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9인)

찬성 의원(247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선교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백종현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4인)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한창민

기권 의원(8인)

곽상언 김선민 김영환 모경중 박홍배 용혜인 유동수 이용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0인)**찬성 의원(25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진	김병주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북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중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윤희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4인)

권향엽 김희정 민형배 박지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54인)****찬성 의원(253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진	김병주	김선교
김선민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1인)

박지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59인)****찬성 의원(253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희	김대식	김문수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중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1인)

용혜인

기권 의원(5인)

곽상언 김도읍 김승수 박지혜 이정현

(전종덕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반대에서 찬성으로 정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1인)

찬성 의원(244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염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재준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국	조배숙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반대 의원(8인)

곽상언	복기왕	용혜인	위성곤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황정아
-----	-----	-----	-----	-----	-----	-----	-----

기권 의원(9인)

김영환	김은혜	민형배	박선원	송재봉	안도걸	이용우	최기상	한창민
-----	-----	-----	-----	-----	-----	-----	-----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61인)****찬성 의원(253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칠승	권향엽	김진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희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국
조배숙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1인)

한기호

기권 의원(7인)

강유정 권영진 김미애 김영환 나경원 박지혜 한창민

(민병덕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59인)****찬성 의원(24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환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중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문석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주	이용선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 국	조배숙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2인)

박홍배 이광희

기권 의원(8인)

곽상언 김선민 김원이 부승찬 양부남 윤건영 이연희 이용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59인)**

찬성 의원(25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종현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권향엽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투표 의원(262인)****찬성 의원(26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국	조배숙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2인)

박선원 이재강

(위성곤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47인)****찬성 의원(23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은혜	김장검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언석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세희	용혜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1인)

정혜경

기권 의원(7인)

고민정 민형배 윤건영 윤종오 이연희 전종덕 정춘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47인)****찬성 의원(202인)**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진	권철승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호	김종양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희정	나경원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서명옥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용혜인	우재준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윤종균	윤한홍
윤희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인영	이재명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동혁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희용	조경태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반대 의원(6인)

노종면 안호영 위성곤 윤종오 정혜경 황정아

기권 의원(39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고민정	권향엽	김원이	김 윤	김재원	민형배	박홍배
복기왕	부승찬	서왕진	손명수	송재봉	신장식	안태준	염태영	오세희	위성락
윤건영	윤준병	이광희	이성윤	이수진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임광현	임미애
장종태	전종덕	전진숙	정춘생	조계원	차규근	최기상	추미애	황명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235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여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종근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지아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1인)

안철수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29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종현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여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지아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1인)

박수영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33인)****찬성 의원(231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중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여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지아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기권 의원(2인)

김미애 박해철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37인)****찬성 의원(234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헌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윤희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환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지아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3인)

김선민 신동욱 조승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39인)****찬성 의원(238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여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윤희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지아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1인)

김민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40인)****찬성 의원(234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지아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6인)

곽상언 권영진 김미애 김희정 박수영 신동욱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43인)****찬성 의원(243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준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종현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지아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김승수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6인)

찬성 의원(245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윤희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1인)

이해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46인)****찬성 의원(245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기권 의원(1인)

조승환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투표 의원(228인)****찬성 의원(227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유정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덕	김은혜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헌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성일중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현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1인)

차지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41인)****찬성 의원(24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유정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덕	김은혜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헌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성일중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현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42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유정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항엽	김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원이	김위상	김윤덕	김은혜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윤희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현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43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덕
김은혜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준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성일중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현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2인)

곽상언 김준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9인)

찬성 의원(175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준호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국	조승래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84인)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종양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염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현승	인요한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천하람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62인)****찬성 의원(175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87인)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천하람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55인)****찬성 의원(171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희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현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83인)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김 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현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정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천하람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기권 의원(1인)

박상웅

(김상훈·서천호·조배숙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민형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166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현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85인)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김 건	김기웅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현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천하람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기권 의원(2인)

김대식 김성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173인)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준현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정하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백종현	백혜련	서명옥	서범수	서삼석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재봉	신동욱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여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양수	이연주	이연희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해식	이현승
인요한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정희용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지아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반대 의원(36인)

강경숙	김남근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김태선	노종면	민병덕	민형배	박정현
박홍배	박희승	부승찬	서미화	서왕진	손명수	신장식	안태준	용혜인	윤종균
윤종오	이광희	이용우	이해민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전진숙	정춘생
정혜경	차규근	한창민	허성무	황명선	황운하				

기권 의원(25인)

강유정	고민정	김문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 윤	박선원	박은정	백승아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신영대	양문석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춘석	임광현	진성준	차지호	최기상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06인)

강경숙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준태	박지원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락	유동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균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양수	이연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임광현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태호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지아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반대 의원(8인)

용혜인 윤종오 임미애 전종덕 정혜경 진성준 차지호 한창민

기권 의원(13인)

김준형 김태선 민형배 민홍철 손명수 신장식 양문석 양부남 위성곤 이해민
이훈기 장경태 정춘생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03인)

강경숙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문수
김미애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준태
박지원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여기구	엄태영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락	유동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욱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양수
이연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임광현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지아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반대 의원(4인)

윤종오	임미애	전종덕	정혜경
-----	-----	-----	-----

기권 의원(15인)

김선민	김태선	민형배	손명수	신장식	양문석	양부남	엄태영	위성곤	이해민
이훈기	장경태	전진숙	정춘생	한창민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투표 의원(216인)****찬성 의원(162인)**

강경숙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민석	김상훈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언석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주영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경호	한민수	한병도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반대 의원(25인)

강대식	권성동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장겸	김정재	김희정	박성훈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동욱	이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승환 최은석 한기호

기권 의원(29인)

강민국 김미애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대출 박수민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현 서범수 서왕진 서일준 안상훈 엄태영 유용원 윤상현 이달희
 이현승 임종득 정점식 정희용 조정훈 조지연 최보운 최수진 최형두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투표 의원(222인)****찬성 의원(146인)**

강경숙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민석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 윤 김재원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재봉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정문 이정현 이주영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병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반대 의원(76인)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광규택 구자근 김 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용원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현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투표 의원(202인)****찬성 의원(200인)**

강경숙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구자근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준태	박지원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언석	송재봉	신동욱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병도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2인)

강민국 이현승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투표 의원(198인)****찬성 의원(138인)**

강경숙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민석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재원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재봉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정문	이정현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병도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반대 의원(59인)

강명구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김 건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용원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주영	이철규	이현승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보운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기권 의원(1인)

김종양

○출석 의원(29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북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정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개의 시 재석 의원(268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	-----	-----	-----	-----	-----	-----	-----	-----	-----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산회 시 재석 의원(31인)

김영호	김영환	김용민	김우영	김준혁	김현정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성준	박찬대	부승찬	안태준	우원식	이강일	이건태	이기현
이병진	이언주	이주영	장경태	정을호	정준호	정태호	조계원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출장 의원(2인)

강승규 주호영

○청가 의원(2인)

권영세 조은희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의사국장 정명호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통일부장관 김영호
국방부장관 김용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출석 정부위원

외교부
제2차관(장관직무대리) 강인선
법무부
차관(장관직무대리) 김석우

【보고사항】

○안전조정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2024. 11. 21.
교육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2024. 11. 27.

○소위원장 선임

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특별	예산안등조정	박 정	더불어민주당	2024. 11. 13.
여성가족	청원심사	김상욱	국민의힘	2024. 11. 18.

○소위원장 개선

위원회	소위원회	사임	보임	교섭단체	연월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	최형두	최수진	국민의힘	2024. 11. 20.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강승규	조지연	국민의힘	2024. 11. 20.
	조지연	강승규	국민의힘	2024. 11. 27.

○의안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7)

이상 2건 11월 1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9)

이상 7건 11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6)

이상 3건 11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11. 14.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5)

11월 1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11. 14.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9)

이상 2건 11월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3)

11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11. 14.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0)

11월 1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5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1)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11. 14.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1)

이상 10건 11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1)

이상 3건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3)

농림수산물유통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4)

이상 9건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1)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7)

이상 4건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1. 14.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2)

이상 9건 11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4)

이상 8건 11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7)

이상 2건 11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3)

11월 15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0)

11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이상 3건 11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4)

11월 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1)

11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6)

이상 8건 11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4. 11. 1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5)

이상 5건 11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9)

이상 3건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0)

이상 4건 11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8)

이상 6건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8)

이상 3건 11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3)

이상 6건 11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이상 2건 11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9)

이상 3건 11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4. 11. 18. 조승래 의원·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9)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4. 11. 18. 조승래 의원·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11. 18.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1)

이상 5건 11월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0)

이상 2건 11월 1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0)

이상 6건 11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4. 11. 18.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2)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4. 11. 18.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4)

이상 3건 11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9)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5)

11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2)

이상 5건 11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4. 11. 19. 장경태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56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장경태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569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이상 4건 11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7)

이상 3건 11월 2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8)

이상 2건 11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7)

11월 2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5)

11월 20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0)

11월 2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3)

이상 2건 11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1)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2024. 11. 19.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5)

이상 2건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민기본법안

(2024. 11. 19.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1)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4. 11. 19.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2)

이상 4건 11월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6)

이상 5건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7)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4. 11. 19.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9)

이상 3건 11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8)

이상 4건 11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8)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0)

이상 3건 11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3)

이상 4건 11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1)

11월 2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이상 2건 11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3)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8)

이상 6건 11월 2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11. 20. 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3)

11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9)

이상 8건 11월 2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2)

이상 2건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 11. 20.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0)

선박재활용법안

(2024. 11. 20.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2)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

(2024. 11. 20. 문금주 의원 등 21인 발의)(의안번호 2205744)

이상 4건 11월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4. 11. 20.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9)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7)

이상 5건 11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2)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11. 20.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7)

이상 3건 11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0)

11월 21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7)

11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4. 11. 21.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8)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2)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4. 11. 21.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2)

이상 4건 11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0)

이상 3건 11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직업교육법안

(2024. 11. 21.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0)

11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4)

11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6)

11월 2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2024. 11. 21.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1)

이상 9건 11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2)

11월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6)

이상 8건 11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11. 21.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3)

이상 2건 11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 11. 21.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77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9)

11월 2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이견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3)

이상 4건 11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0)

이상 2건 11월 2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4)

이상 2건 11월 2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6)

이상 2건 11월 2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5)

이상 4건 11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5)

이상 3건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4)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6)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7)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8)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9)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1)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2)

이상 12건 11월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1. 22.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2)

이상 3건 11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2024. 11. 22.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5)

이상 4건 11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4)

이상 7건 11월 2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4)

11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0)

이상 2건 1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1)

이상 3건 11월 2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7)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2024. 11. 25.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0)

이상 3건 11월 2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7)

11월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6)

이상 2건 11월 26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

(2024. 11. 25.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8)

이상 2건 11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3)

이상 2건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5)

이상 2건 11월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 11. 25.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4)

11월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7)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1)

이상 4건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3)

이상 4건 11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3)

이상 2건 11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6)

이상 2건 11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4)

이상 2건 11월 2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이상 3건 11월 2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6)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1. 26.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5)

이상 3건 11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9)

이상 4건 11월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8)

이상 2건 11월 27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900)

이상 7건 11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6)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90)

이상 2건 11월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2)

이상 2건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7)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2)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2024. 11. 26.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5)

이상 8건 11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7)

이상 7건 11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9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3)

이상 2건 11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4)

11월 27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송언석) 징계안

(2024. 11. 14. 정태호 의원 등 20인 요구)(의안번호 2205575)

국회의원(윤한홍) 징계안

(2024. 11. 20. 박성준 의원 등 20인 요구)(의안번호 220574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교홍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2024. 11. 27. 이언주 의원 등 70인 발의)(의안번호 22059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61)

이상 5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2)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 11. 27. 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5)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4. 11. 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7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5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7.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64)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

(2024. 11. 28. 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994)

○의안 심사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4. 10. 7. 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04595)

(수정하여 의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2.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30.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0.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1.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5.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5.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30.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30.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5)

(이상 1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4건 국회운영위원장 보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7)

(수정하여 의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8.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4.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1.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0.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0)

(이상 1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3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1)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5.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6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9.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6)

(이상 1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6건 교육위원장 보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

(수정하여 의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9.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8)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2024. 11. 5.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260)

(원안대로 의결)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2024. 8. 30.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0)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4.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3)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9. 김건 의원·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1)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2024. 7. 16. 조계원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1)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2024. 10. 10. 이재정 의원 등 41인 발의)(의안번호 2204644)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2024. 10.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494)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2024. 10.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496)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국방위원장 보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4.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0)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

(2024. 11. 20. 문금주 의원 등 21인 발의)(의안번호 2205744)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4.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3)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2.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9)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6.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3)

(이상 7건 수정하여 의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2)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007)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6. 7.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8)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4. 6. 24.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0)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4. 6. 28.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47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8.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4.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8. 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7.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9.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4.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4.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8)

(이상 5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6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3.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4)

11월 14일 발의자 철회 요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5)

11월 2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에 관한 청원

(2024. 11. 14. 임태훈 외 2인으로부터 김용민·김종민·박찬대·용혜인·윤종오·한창민·황운하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55)

11월 1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검사와 조사 및 파면에 관한 청원

(2024. 11. 15. 김재형 외 50,08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6)

11월 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

(2024. 11. 20. 유현준 외 56,14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8)

11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2024. 11. 20. 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7)

11월 21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요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서

(2024. 11. 26. 대통령 제출)

○추천의뢰서 제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24. 11. 22. 대통령 제출)

(다음 페이지에 계속)

국회소속기관부석

의사인담의 사무총장 의장 의사국장 의사회장 의사2담당 의사지원

को

의사I답당

국무위원보좌석

The diagram illustrates the layout of a traditional Korean market (Jangjuk) with various stalls and buildings. The layout is organized into several distinct sections, each color-coded to represent different types of stalls or buildings. The top section is yellow, the middle section is green, and the bottom section is blue. The stalls are labeled with Korean text, including names of shops and products. A legend at the bottom right identifies the colors: yellow for 'Jangjuk' (market), green for 'Jangjuk' (market), blue for 'Jangjuk' (market), and red for 'Jangjuk' (market).